

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00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·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'서울장학재단'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·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장학재단
- 관련법령
 - 법령 : 「민법」 제32조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 - 조례 : 「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
‘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’
- 출연금액 : 11,571,543천원
(인건비 510,594, 운영경비 583,913, 사업비 10,438,359, 성과급 38,677)

나. 주요사업

- 공평한 교육의 기회제공·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
 - 저소득가정 지원 장학사업 : 등록금 및 진로개발 학업장려 장학금지원
 - 공익인재 대학생 지원 및 민간기탁 연계 장학사업
-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
 - 인재지원 및 교류 활성화 : 멘토링, 특강,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
 - 홍보사업 : 장학사업 및 장학생 스토리 홍보를 통한 민간자원연계 지원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,
-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 학생을 발굴·육성하고, 예·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및 공익활동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교육정책과 교육정책팀 한동석(☎2133-3913)